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에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제2조(이용계약)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수납 한도액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4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 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		
	보험료감경대상자			9%		
	일반수급자			15%		

②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 요양	금액(원)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 미이용 시 (60분 이상) 47,670원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긴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 3.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4.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이용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 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